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FAQ

2024.12.



※ 본 자료는 사업신청서 작성 등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공고 및 신청

UI.	임대한 공장이어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 2
02.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이 경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2
03.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2
04.	예상효과표에 B/C 항목 기재가 필수인가요?3
05.	발표평가를 진행할 때, 발표자는 꼭 수행책임자여야 하나요? 3
06.	견적서를 발급한 시공업체가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아닌데 계약 체결이 가능
	한가요? 견적업체가 아니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4
07.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5
II .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 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
01.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02.03.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02.03.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02.03.04.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02.03.04.05.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01.02.03.04.05.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목 차

07. 사업비 통장의 발급조건이 있나요?9
Ⅲ. 사업수행 관리
01.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입금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11
02. 물품을 자체제작할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03. 정부보조금사업 시 누리장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04. 월간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12
05. 사업결과보고서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각각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13
06.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도 되나요? 13
07. 사업으로 취득한 설비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통해 대출 행위를 할 수 있나
এ?
08.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컨설팅 기관 등의 외부업체에서 작성해도 되나
요?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14
09.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 중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4
10. 세금계산서는 일괄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금 지급 시 지급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15
11. 금년도 사업 수행 이후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15
12. 중간점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6

I. 공고 및 신청

- 01 임대한 공장이어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신청 할 수 있나요?
- 임대공장일 경우 공고문에 따라 협약종료일(2025.11.30.)로부터 5년 이상 임대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이 경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공장등록증 내 부지 기준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청해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 시 "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 기업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등이 고려되어 평가될 예정입니다.

예상효과표에 B/C 항목 기재가 필수인가요?

→ B/C항목 기재는 필수입니다. 사업계획서 내 제공된 "경제적 성과 산정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5

발표평가를 진행할 때, 발표자는 꼭 수행책임자여야 하나요?

- 발표평가(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표평가에는 발표자 외 신청기업 직원 1인을 제외한 외부 인원은 배석이 불가합니다.

견적서를 발급한 시공업체가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아닌데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견적업체가 아니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 지원기업이 행하는 계약은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을 준수하여 체결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 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 금액에 미달하는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아도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리지침 준수 시 정상적인 집행 건으로 인 정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은 조달청장에게 계약 절차를 요청하여야 하며(중앙조달계약)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 공사 관련 계약
 - 2.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계약
- → 계약 체결 대상 기업의 요건은 당초 견적 여부가 아닌 사업계획 및 원가계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 사양,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입니다.
 - 본 사업의 최종평가 시 설치된 설비의 사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가 아닌 지원기업이 전담하므로 계약 체결 시 성능에 대한 책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07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다음의 경우에 따라 계상·산정 및 협약 후 발주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유형자산	건설비
경우1	물품구매만 진행 (지원기업 자체 인력으로 설치하는 경우)	-
경우2	물품구매	설치공사 발주(제조사가 아닌 시공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
경우3	-	물품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공사에서 일괄 수행하는 경우

[※]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각각 제출(발주 시 동일한 제조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음)

II. 협약 체결

- 기존에 소유한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민간부담금을 입금할 때 얼마나 하면 되나요?
- → 사업 참여 시에는 e나라도움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을 협약체결 전까지 해당 통 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 민간부담금 중 잔액은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02 민간부담금 입금확인증으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통장 이체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03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 료일 이후 3개월까지입니다.
- → 금액은 정부지원금 총액이며, 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협약 전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협약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 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협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원가계산을 제출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제시하신 총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의 부품별로 물가조사를 통한 원가계산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교견적서를 통한 원가 검토 또한 가능합니다.

06 국세 납입증명서 제출 시, 지원기업의 사업장이 지점인데 본점의 국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지점의 국세가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통장의 발급조건이 있나요?

→ 사업비 통장은 입출금에 자유롭고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1조(별도계정 등)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Ⅲ. 사업수행 관리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입금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01 성구/161 수 있는 건가요?

- ➡ 본 사업은 예치형 국고보조사업으로 협약체결 후 e나라도움에 사업비통장계좌(보조금계좌)를 등록하시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면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정부지원금이 예치됩니다.
- ⇒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집행 등록(세금계산서 등 첨부)"등 절차를 통해 관련 금액이 거래처로 직접 입금됩니다.

물품을 자체제작할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 ➡ 다음 금액 이상의 발주 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햐 합니다.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3 정부보조금사업 시 누리장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 나라장터와 누리장터는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용역・공사 계약 시에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① 4 월간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 월간보고서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진도현황을 누적방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9월 월간보고서**는 10월 10일까지 제출 **10월 월간보고서**는 11월 10일까지 제출(9월 월간보고서의 내용 포함)

■ 진도율은 각 설비별로 작성하고, 각 설비 진도율의 평균을 총괄진도율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업결과보고서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각각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사업결과보고서는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사업 결과보고서로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e나라도움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6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도 되나요?

- ➡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리지침 [별표1] 사업별 지원내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 치하는 설비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전력의 판매 또는 이를 위한 설비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됩니다.

07

사업으로 취득한 설비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통해 대출행위를 할 수 있나요?

→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 시 「보조금법」 제35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컨설팅 기관 등의 외부업체에서 작성해도 되나요?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

- ➡ 정산보고서는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원기업에서 작성 및 제출 하여야하며, 컨설팅기업은 작성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 증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총액이 10억원인 지원기업은 정산 시 정산보고서 검증과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9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금 중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개선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한정되며 지원기업이 지급해야 할 대가 중 부가가치세는 지원기업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비 계 정에 합산하여 통합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괄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금 지급 시지급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 지원기업은 사업수행 기간 중 자금 집행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 시 일괄 발급은 불가합니다.
- 지원기업은 대금을 선금, 중도금, 잔금 등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비율은 과제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자금의 집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대금 지급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부지원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도율 70% 달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중간 점검시점까지 잔금을 제외한 선금 및 중도금으로 총 계약비용의 70%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시)

분야	설비	선금	중도금	잔금
지원분야 1	설비1-1	선금1-1	중도금1-1	잔금1-1
시원군약 1	설비1-2	선금1-2	_	잔금1-2
지원분야 2	설비2-1	선금2-1	_	잔금2-1
시원군약 2	설비2-2	선금2-2	중도금2-2	잔금2-2

- 설비1-1: 선금1-1, 중도금1-1, 잔금1-1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 필요
- 설비1-2: 선금1-2, 잔금1-2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 필요

11

금년도 사업 수행 이후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추가 지 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달성하는 친환경 공장의 모델을 보급·확산하는 사업으로 동일 공장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한 설비를 개선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중간점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각 지원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정상 수행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의 지급 가능 여부의 판별을 위해서 9월~10월 중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합니다.
- 진도율 70% 달성 시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장을 방문하되 기준 진도율 달성 기업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잔금 지급 및 집행 지원 예정입니다.